

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꼭 정기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연간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인당 연간 최대 80만원 지급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22.9월 또는 '23.3월에 반기신청한 경우,
정기 신청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 자격은 뒷면을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2023. 5.1. ~ 5.31.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6.1.~11.30.)**에 '기한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1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 2 홈택스(모바일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 3 홈택스(PC) www.hometax.go.kr
-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신청 요청



장려금 상담

☎ 1566-3636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



※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배우자 ¹⁾ 와 부양자녀 ²⁾ , 70세 이상 직계존속 ³⁾ 이 모두 없는 가구		
소득요건 (부부합산)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 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의 총급여액 등 ⁴⁾ 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 가구유형 및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른 지급가능액 >			
기타요건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지급액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해당없음
	홀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4,000만 원 미만 / 자녀1인당 80만 원 (최소 5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총소득: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기타요건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4)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2022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만 해당)			

*장려금 계산은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기타(취소·증빙·계좌 등) → 계산해보기에서 가능



유의사항

- 1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배우자 포함)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3 장려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4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 5 기한 후 신청(6.1.~11.30.)의 경우 산정금액에서 10%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6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30%한도 내에서 총당 후 지급합니다.
- 7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 동안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